

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
----------	-----

제출년월일 : 1996. . .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7호)이 개정 공포되어 '96.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규정 개정내용에 맞게 영주시여비조례를 전문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여비의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무로 여행할 때"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함 (조례안 제1조)
- 종전에는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개정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되, 준용시의 요령을 항목별로 명시함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자료 : 붙임

-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1부.

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의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도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종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등3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종 "전문직공무원의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종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증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부
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_____ _____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_____.</p>
<p>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p>	<p><삭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p>
<p>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1증 "전문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규정"으로 본다.</p>	<p><삭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p>
<p>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에 몽두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한다.</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_____ _____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도	개 정 안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 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이전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u> <u>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u> <u>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u> <u>자에게 국내여비규정【별표3】의</u> <u>이전비 정액도를 준용하여 이전비를</u> <u>지급할 수 있다.</u></p> <p><u>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u> <u>는 정액의 전부</u></p> <p><u>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u> <u>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u></p>	<p><삭 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p>
<p><u>제6조(현장지도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u> <u>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u> <u>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u> <u>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일하는</u> <u>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u> <u>제2조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u> <u>한다.</u></p>	<p><삭 제></p>
<p><u>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u> <u>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u> <u>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u> <u>국외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u> <u>준용한다.</u></p>	<p><u>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u> <u>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u> <u>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u> <u>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u> <u>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u></p>

회 기 행	개 정 안
	<p>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증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p> <p>2. 제8조제3항증 "재정겸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증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3. 제17조제1항 단서증 "관공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등규정 제21조는 "등규칙 제17조"로 본다.</p> <p>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증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으로, 등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증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등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증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p> <p>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p>

<신 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
으로 본다.

언 어	개 전 안
	<p>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p> <p>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증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p> <p>4. 제24조제1항 단서증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p>

참 고 자 료

◎ 국내여비규정 [별표2]

증 전				개			
여비정액표 (단위: 원)				여비정액표 (단위: 원)			
등급	현지교통비 (1인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인당)	등급	현지교통비 (1인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인당)
특호	6,500	실비	11,000	특호	6,500	실비	25,000
제 1호	6,500	20,700	11,000	제 1호	6,500	37,500	25,000
제 2호	6,500	20,700	11,000	제 2호	6,500	37,500	25,000
제 3호	6,500	16,200	10,500	제 3호	6,500	18,000	18,000
제 4호	6,500	13,500	10,000	제 4호	6,500	14,500	15,000

관인생략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 북구. 산격동1443-5 /전화 950-2331 /전속 950-2336 /담당 이종호

문서번호 회계 45110 - 15

시행일자 '96. 1. 8. (1년)

(경유)

수신 시장, 군수

참조 회계(재무)과장

서 결		77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6. 01. 09.	결	
수	번호	16-	제	
처	리	과	공	
답	당	자	람	26

제 목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시달

1. 내무부 지공 12500-486('95.12.21)의 이첩입니다.
2. 국내여비규정증 개정안이 '95.12.29일 국무회의 의결(관보 13201호 '95.12.29)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증 개정조례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시.군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 1.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증 개정조례 표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경상북도지사

[내무국장장관]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역시 (※ 특별시·도·시·군·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 도지사·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 (※ 도지사·군수·구청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3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농·포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 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농·포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 도지사·군수·구청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 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국내 또는 국외여행 을 할 때에 _____. _____.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사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
제3조(여비정책)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책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사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ol style="list-style-type: none">__________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_____.

② 제 1 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인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직할시장(도지사)이 따로 정한다.

제 5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입

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 규정별표 3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부입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 정액의 전부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장(* 도지사·군수·구청장) -----.

(삭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

2. 무임한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6조 (현장지도여비)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및 예산회계법시

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

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

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

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

용한다.

(삭 제)

※ 현지교통비 (1일 6,500원)

도는 근무지내 출장여비

(4시간 이상 10,000원,

4시간 미만 5,000원) 지급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

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

각 "시장(※ 도지사·군수·구
청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
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총무
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
으로 본다.
3. 제17조제3항 단서 중 "관용차
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
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
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
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
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
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
로 본다.

(신설)

제 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시장(※ 도지사·군수·구청
장)"으로 본다.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
속장관"은 각각 "시장(※ 도지
사·군수·구청장)"으로 본다.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
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